

서울시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

수신자 전 회원사 (참조)

제 목 차로이탈경고장치 미장착 차량 과태료 부과 시행 알림

- 1. 국토교통부 교통안전복지과-624(2020.2.14.)와 관련입니다.
- 2. 교통안전법 제55조의2 및 제65조에 따라 차로이탈경고장치 의무장착 대상 차량이 장치를 미장착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 (`20.1.1 시행)하고 있습니다.
- 3.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에서는 지자체에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여부를 단속하고 미장착 차량에 대한 행정처분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것를 요청하였사오니, 각 사에서는 업 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 - ※ (과태료 1차 : 50만원, 2차 : 100만원, 3차 : 150만원)
- ※ 붙임: 국토교통부 공문 사본 1부.
- ※붙임자료는 조합홈페이지(www.tourbus.or.kr)에서 내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. [끝]

서울시전세버스운송사업



담당 박영수 부장 라영석 실장 박호동 전무이사 박태환 협조자 시행 서전버조 20- 64호 (2020.02.19)접수 () 우 05510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19(교통회관 11층) / http://www.tourbus.or.kr 전화 02-422-0019 전송 02-418-0071 / /공개

"안전띠는 생명띠 정지선은 생명선"